



제 2020-015호

중국

방송을 허락 없이 동시 중계한 영상APP 운영자에 저작권 침해 판결

북경사무소

■ 현황

- 최근 항저우 인터넷법원은 중국판 런닝맨 ‘달려라’ 시즌 2를 허락 없이 동시 생중계한 APP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법원은 판결에서 “피소된 APP가 관리자의 허락 없이 문제 된 방송프로그램을 동시 생중계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경제손실 및 합리비용 총 20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 아래에서 동 사건의 개요를 살펴봄



■ 주요 내용

- 원고 저장방송TV그룹(浙江广播电视集团)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 E 회사의 영상 APP가 허락 없이 자사가 저작권을 가진 ‘달려라 (시즌 2)’ 예능프로그램을 동시 중계했으므로, 피고 5개 회사가 연대하여 경제손실 660만 위안과 합리비용 40만 위안을 배상하고, 공동으로 신문 매체에 공개 사과 및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청구함
- 피고 A, B, C 회사는 “APP에 올라온 프로그램 제목이 ‘달려라’이지만, 원고 회사의 방송프로그램이 아니라면서 원고 회사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없다”고 항변함. E 회사는 “자사는 APP 개발자로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없다”고 항변함. D 회사는 “자사는 문제 된 APP와 무관하다”고 항변함
- 법원은 심리 후 최종적으로 A, B, C 회사 3곳의 배상책임만을 인정함.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음
 - APP에서 방영된 콘텐츠가 ‘달려라(시즌 2)’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공중받은 영상물에 대한 조사 결과, APP에서 방영된 콘텐츠가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달려라’ 시즌 2와 동일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함
 - 피소된 APP는 원고의 어떠한 권리를 침해했는지와 관련하여 법원은 “원고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권리는 ‘방송권(广播权)’으로, 방송권이란 무선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저작물을 공중에게 송신 또는 중계하거나, 유선으로 송신 또는 중계하는 방식으로 공중에게 저작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온라인상 동시 중계는 현재 생중계되고 있는 TV 프로그램을 인터넷변환부호화(Transcoding)기술을 이용하여 공중에게 중계하는 행위로서, 저작물을 인터넷을 통하여 동시 중계하는 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제11호가 정하고 있는 방송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고, 저작권자의 합법권익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제17호(반드시 저작권자가 향유해야 할 기타 권리)의 규정을 통하여 피소된 저작물의 인터넷을 통한 동시 중계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 된 APP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동시 중계한 행위는 원고 저장방송TV그룹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밝힘

- 배상주체와 관련하여 “C 회사가 문제 된 APP의 직접적인 권리자이자 운영자지만, A와 B 회사가 문제 된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해당 APP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므로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D와 E 회사는 문제 된 APP의 운영에 관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두 회사에 대한 연대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적시함
- 배상액과 관련하여 “첫째, 침해된 작품이 높은 지명도와 상업적 가치가 있다. 둘째, 침해된 작품은 연속해서 방송되는 예능프로그램으로 각각의 프로그램은 독립적인 저작물에 해당하며, 동 사안에서 이미 총 9회의 방송프로그램이 문제 되고 있으므로 배상액은 누계해서 확정해야 한다. 셋째, 문제 된 침해행위는 동시 중계로서 해당 프로그램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침해로 인한 영향 또한 엄중하다. 넷째, 해당 APP의 이용자가 매우 많다. 다섯째, 동 사건의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공증과 증거취득 등의 어려움 등 요소를 고려하고, 권리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충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법원은 배상액수와 합리비용 합계 20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결정한다.”
- 하지만 법원은 공개 사과와 영향제거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동 사안에서 피고회사가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 저장방송TV그룹이 침해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명성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함



■ 평가

- 중국에서는 우리의 공중수신권이란 개념이 없이, 과거 우리 저작권법처럼 방송권과 전송권만을 저작재산권의 지분권으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침해를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 되고 있음. 다행히 중국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제17호가 개괄조항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에 근거하여 보호를 해 주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호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따라서 향후 저작권법 개정 때 이와 관련한 내용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음

■ 출처

- 항저우 인터넷법원 위챗 공중계정(杭州互联网法院微信公众号)
- <https://mp.weixin.qq.com/s/o7QgPnRXI5lEgRqT7Nb15g>